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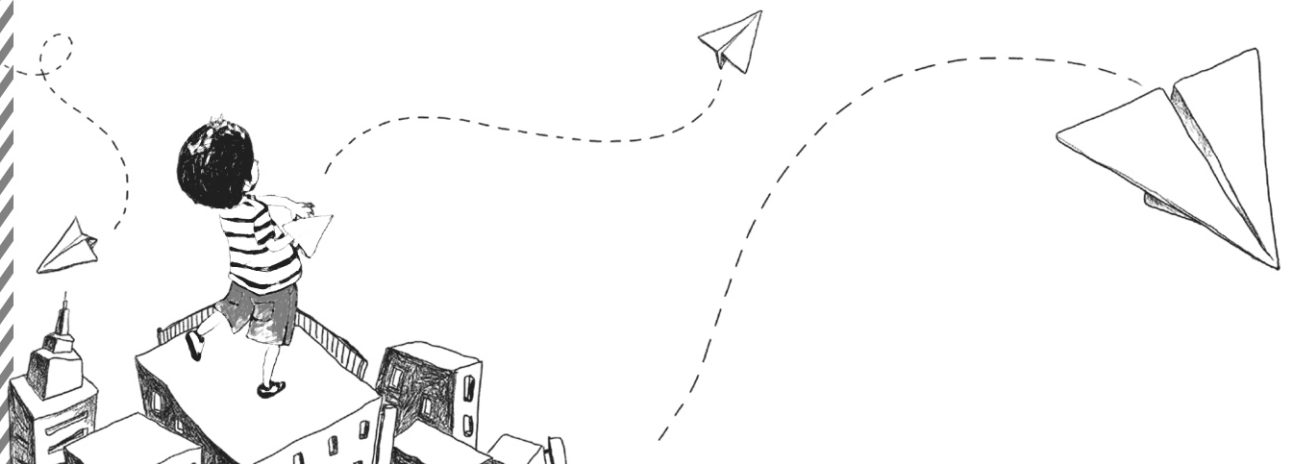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함하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나누기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오후2시 | 장소: 경기문화재단 강의실(3층)

주관: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안산평화의 집,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관)구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목차

제 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개요 / 5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 11

주제발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 15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토론문1.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 이용서비스 영역 / 33

오유정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토론문2.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 노인서비스 영역 / 39

신승희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부장)

토론문3.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 장애서비스 영역 / 45

이인숙 (안산평화의 집 과장)

토론문4.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방향과 제언” / 5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제 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개요

『사회복지 인권실천 더하기(+), 나누기(÷)』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인권증진과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권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 개 요

- 일 시 : 2012. 11. 30. (금) 14:00 ~ 17:00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강의실(3층)
- 참여대상 : 사회복지인권실천에 관심있는 누구나

○ 주요내용

- 사회복지 인권적 패러다임의 전환(거시적&미시적)
- 사회복지실천의 인권적 딜레마
-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친화적 실천 방안

○ 주제 및 토론

- 1) 사 회 : 송원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 2) 주제발표 :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3) 지정토론
 - 인권실천① : 이용서비스(사례관리 및 상담 등) / 오유정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인권실천② : 노인영역 / 신승희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부장)
 - 인권실천③ : 장애영역 / 이인숙 (안산평화의집 과장)
 - 인권전문가 : 인권동향과 사회복지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4) 분임토론
 - 이용서비스, 노인영역, 장애영역 : 지정토론 주제로 분임토론 진행
 - 각 영역별로 분임토론 사회자 진행

○ 주 관 :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안산평화의집,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관)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_총 7개 기관·시설)

사회복지 인권실천 더하기(+), 나누기(÷) 워크숍 일정표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3:30	14:00	30	○ 등록 및 접수	
14:00	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14:05	14:35	30	○ 주제발표	
14:35	15:15	40	○ 지정토론(토론 10분)	
15:15	15:25	10	○ 휴식 및 분임토의실 이동	
15:25	16:15	50	○ 영역별 분임토의	
16:15	16:25	10	○ 휴식 및 전체토론장소 이동	
16:25	16:55	30	○ 분임토의 결과발표 ○ 자유토론(패널 코멘트 포함)	
16:55	17:00	5	○ 폐 회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소개

1.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활동 소개

- ◎ 2011 영화 도가니 사회복지관련 기관 인권 침해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옴.
-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주요조항에 인권의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짐.
- ◎ 2011 사회복지 인권교육 기초과정 수료생 중심으로 교육만이 아닌 인권실천으로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모임.
- ◎ 사회복지 이용자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음.
- ◎ 2011. 08. 17 : 초동모임
 - 인권친화적 사회복지기관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 신청기관들이 함께 선정
- ◎ 1차 모임 ~ 14차 모임 진행(2012. 11. 14 현재)
 - 2012 사업계획논의
 - 이용인 중심의 인권실천 선언문 작성
 - 인권 세미나/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 인권사례논의/ 인권사례분석 오픈세미나 준비
 - 2012 인권심화과정 "사회복지, 인권을 전파하다"참여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공동작성
 -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준비
 - 인권 세미나/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 네트워크 참여기관 내 인권교육 실천가 활동 및 공유
- ◎ 2012. 06. 25.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발족식 진행
 - 네트워크 참여기관 MOU체결 진행
 - 네트워크 현판 수여식 진행

2.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활동의 의의

- ◎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인권의 관점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과 매개의 역할을 하며, 인권을 이해하는 구체적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인권친화적 사회복지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로의 멘토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참여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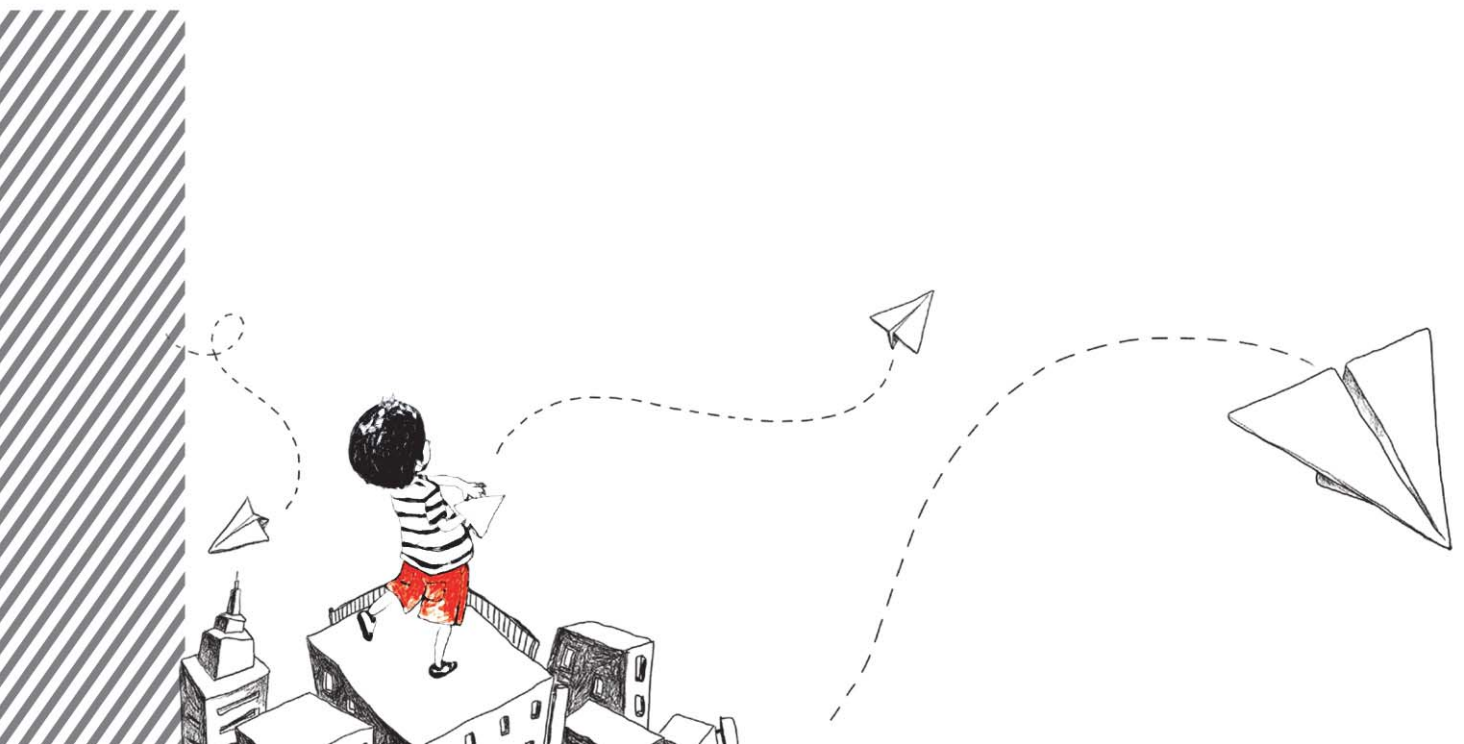
NO.	참여기관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1	경기복지시민연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7-68	Tel. 031-215-4399 Fax. 031-215-4389	
2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조남동 산 9-19	Tel. 031-403-0110 Fax. 031-403-0196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39	Tel. 031-438-8321 Fax. 031-438-8324	
4	서호노인복지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1	Tel. 031-291-0911 Fax. 031-291-0914	
5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의왕시 문화공원길 47	Tel. 031-427-0580 Fax. 031-427-0581	
6	안산 평화의 집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982-7	Tel. 031-417-7091 Fax. 031-417-5156	
7	(참관)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 수택3동 851-1	Tel. 031-562-0068 Fax. 031-562-0078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하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우리 사회는 누구나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받아들여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리며, 이용인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정의하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 한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실천 1] 자기결정

이용인은 욕구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용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

실천 2] 정보접근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 또한, 인권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등 관련 자료를 기관에 소장하고, 이용인에게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인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실천 3] 사생활 보장

이용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지켜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정보와 사생활, 서비스 지원 정도 등이 이용인이 알지 못하는 내/외부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천한다.

실천 4] 안전과 편의증진

이용인은 기관 이용 시 어떠한 물리적 장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받아 안전과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

실천 5] 인권교육

이용인과 실천가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국내외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한다. 이를 통해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복지서비스 원칙을 채택하여 실천한다.

실천 6] 인권계획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인권실천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인권의 가치를 담은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실천한다.

실천 7] 인권위원회

인권적 사회복지실천을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인과 실천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천한다.

실천 8] 정책참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이용인을 옹호하며 인권에 문제가 있는 사회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실천 9] 인권모델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모델로써 견인을 담당하고 허브기능의 역할을 실천한다.

실천 10] 인권연대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소속 기관은 위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고, 인권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사회복지 실천이 인권의 관점으로 재구성되기 위한 노력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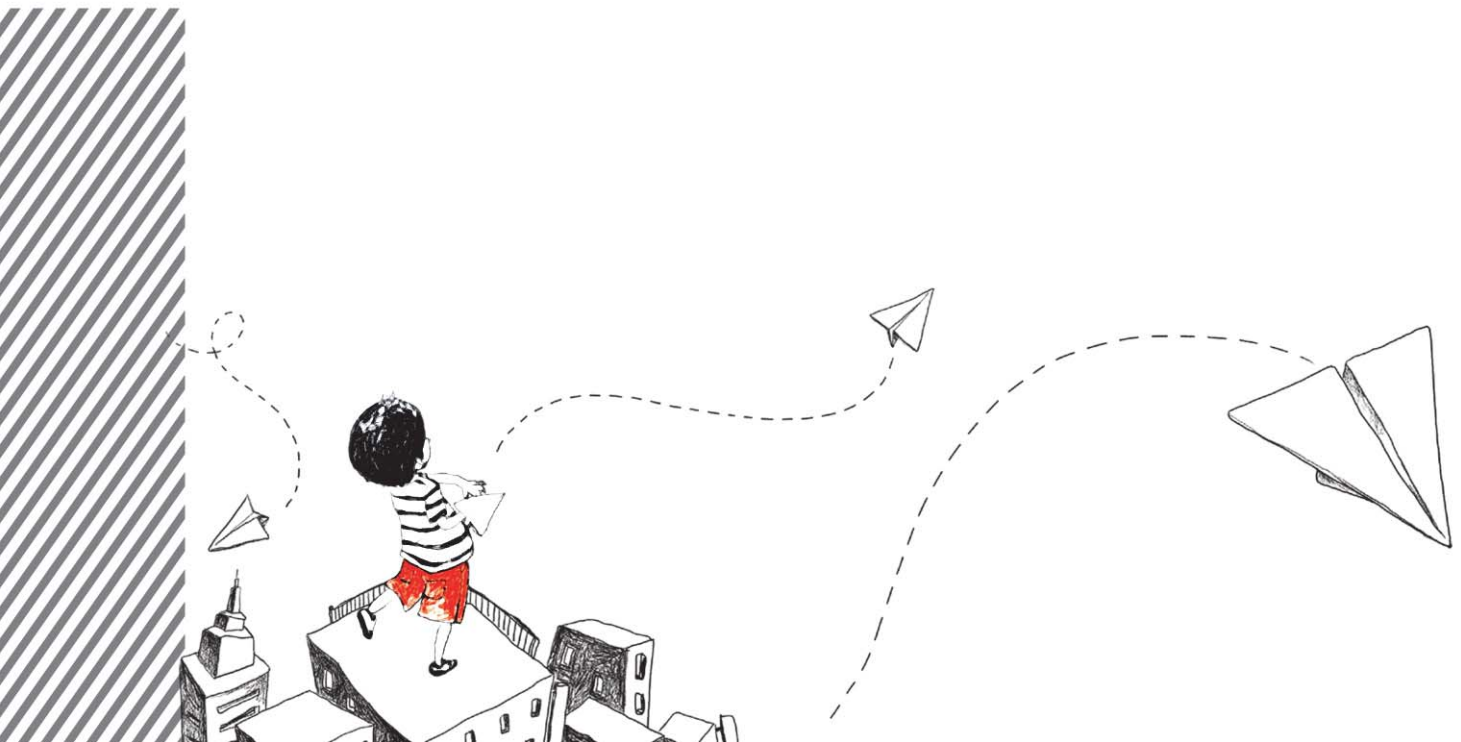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불어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박숙경¹⁾(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들어가며

오늘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권의 주체'란 진술은 어느새 '자명한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와 신분제, 남녀차별이 극명했던 과거 역사를 고려할 때 오늘날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생각은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린헌트'란 학자는 이러한 변화를 '인권의 발명'이라 주장합니다.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없던 것이 발명되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고려할 때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 역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위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국제규약 등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매우 많습니다. 국적, 성별, 나이, 장애, 경제력, 노동자로서의 지위(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우리네 삶의 형편은 많이 달라집니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권이 강화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적인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흐름은 당연하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회복지가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자체가 중요한 인권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반응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계에서 인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권을 패러다임 또는 실천기술로 수용하는 기능적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을 외부로부터 주입된 '당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인권과 사회복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 인권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우선 인권과 사회복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전

1)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탈시설정책위원회(사무국장)를 중심으로 장애인 및 시설거주인 인권확보, 탈시설운동을 하고 있다.

문가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뛰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인권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로부터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인권의제를 도출하고 과제를 모색하지 않은 채 인권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주입받거나, 기능적으로 도출하는 태도로는 추상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번 워크숍이 매우 소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과 인권활동가가 함께 만나 직접 사회복지와 인권을 하나로 엮어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로부터 구체적인 의제와 원칙을 도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워크숍의 발제를 맡아 한편 기쁘지만 적잖이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사회복지와 인권현장에서 실천해 온 저 역시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의 기능적 접근 또는 인권과 사회복지를 따로 국밥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을 넘어서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 많은 생각들이 맴돌며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 고민하다 시간이 늦어지고 워크숍을 기획하고 토론을 맡은 선생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문득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상황에서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려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가야하는데 나 홀로 내용을 잘 구성해보려는 욕심이 결국은 시간을 늦추고 여럿이 함께 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년 전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시설화 운동을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동료들을 믿고 진정성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리되지 않은 몇몇 이야기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제 고민과 원칙들을 두서없이 제시할 것입니다. 비록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사유와 실천을 통해 매일같이 고민해왔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자와 토론자, 청중 여러분의 함께 함을 통해 이 발제문과 워크숍이 인권과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구성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인권교육 등에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인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회복지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인권침해를 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와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는 것 같다.

둘째,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보장 사이의 딜레마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계속 먹으려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사탕을 계속 주란 말이나? 현실을 잘 모르고 인권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기를 한다. 무한정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복지실천은 엉망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가들도 사람이고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데 왜 이용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는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권이 없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제기는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제기됩니다.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 질문들은 우리사회가 인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제 견해를 가볍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열린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세 가지 문제제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자유와 함께 의식주 등 사회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인권옹호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발생해 온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은 네거티브한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구제를 하는 권리옹호 활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을 학습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둘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자기결정 예를 들어 자신을 해치는 행위(자살 충동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순히 자기결정으로 받아들여 방치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닌 방임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설명하긴 어렵고 위험하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상호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기결정 존중을 방임과 혼동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논의해야할 상황에서 오해를 바탕으로 인권을 터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인권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개 이용자들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는 예외 없이 강자로부터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²⁾.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사이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강조하지만, 고용주인 서비스 기관과 노동자인 사회복지실천가와와의 관계 등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상대적 약자인 경우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논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 지향

2) 발제자는 이를 만유인권(萬有人權)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인권은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

- 사회복지실천가는 2세대 인권활동가임을 직시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적 권위를 통해 인간의 사적인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원조전문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사정, 개입, 사례관리, 치료, 옹호 등의 이름으로 타인의 사적인 삶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제도적 권위 때문입니다. 물론 일선현장에서 개인의 원조요청과 계약에 의해 개입이 이뤄지지만 이 바탕에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권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권위를 이해하려면 근대 이후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등장한 전문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표적 전문직인 법률가, 의사, 교사 등은 18,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기존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출현한 새로운 중간 지배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뒤늦게 출현한 사회복지사들 역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등장한 전문직입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전문적 기술을 취득한 엘리트 집단으로 제도화된 자격제도 등을 통해 타인의 사적 삶에 개입하는 일종의 공적 권한과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1957년 그린우드는 전문직들을 판단하기 위한 공통속성으로 '이론적 체계, 전문적 권위, 사회로 부터의 권한과 특권 부여, 윤리강령, 고유문화' 이상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이러한 전문적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무심코 행사하는 전문적 권위는 윤리강령과 같은 인권보장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굳이 이런 전문직의 속성을 들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원조하기 위해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가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감수성을 증진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인권학습과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사회복지실천가의 기본적 의무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관점

- 사회복지지는 경쟁의 강화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보완기제로 발달한 것입니다. 유럽, 미국, 러시아의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를 분석한 가스통 V. 림 링거는 '복지정책이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란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효화시키고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수용하는데 일조'했음을 주장합니다.³⁾ 최근 EBS가 화제 속에 방영한 5부작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으로 '따뜻한 복지자본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등 국내에서 최근 진행된 일련의 선거에서 '복지'가 주요정책공약으로 등장한 것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가스통 V. 림링거.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옮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8, 한울아카데미.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가족과 마을 등 전통적 공동체 해체, 환경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연금과 공공부조 등의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가 발생시킨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 기능과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이면에는 자본주의체제로 인한 마을과 가족 등 전통적 공동체 해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가 개입의 불가피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며 '사회적 평등'이 동반되어야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사회복지제도의 유래와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지향해야 합니다.

- 한편 인권의 중요원칙인 '상호불가분성'은 자유·평등·연대 세 개의 가치가 함께 존중되고 실현되어야만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권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사회복지보다 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담론입니다. 과거 사회주의진영과 자유주의진영이 대립하던 냉전체제에서 인권은 두개 체제 국가들 사이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진영에는 자유권보장을 자유주의 진영에는 평등권보장을 주문해왔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체제가 독주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인권은 자유·평등·연대의 가치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국가와 국제사회에 촉구하며 신자유주의를 견제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과 사회복지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하나의 화살인 것입니다.

셋, '인권+사회복지'가 아닌 '인권 = 사회복지'

- 이렇듯 인권과 사회복지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하나의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인권과 사회복지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인권과 사회복지를 따로 국밥처럼 적당히 버무려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인권, 인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정신을 드러내어 두개의 개념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하나의 화살임을 이해하고,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원칙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인권전문가는 사회복지를 잘 모르고 사회복지전문가는 인권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인권교육이 추상적인 당위를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권활동가들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위만 강조하는 이상적인 사람들로 치부하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권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당연한 인권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구조를 바꿀 생각 없이 미시적 실천에 머물며 자

신들의 몫인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권활동가들에게 요구하는 방어적이며 수동적인 사람들로 비취집니다. 발제자 역시 사회복지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냉소적인 사회복지실천가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인권과 사회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권전문가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현실로 부터 의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 과제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의 지향을 이야기하다보니 내용이 좀 거창해졌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지향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은 인간관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인간관계는 나(I)와 너(YOU) 이 둘을 둘러싼 외부환경 (ENVIRONMENTAL)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중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YOU)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용자를 칭하는 용어로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서비스 제공주체인 나와 양자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를 일방적 서비스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내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와 이 둘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개 이용자의 문제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학습 : 인권 제대로 이해하기

-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용자들 역시 인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권은 상호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습하고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뤄지는 인권교육은 인권학습을 도울 촉진자, 인권학습의 내용, 인권학습의 방법 세 가지 측면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교육 요구가 폭주하고 있지만 사실 인권과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대로 학습하도록 도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과 내용 등 인권과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학습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친 인권적인 인권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적습니다.

-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상당수가 외부강사에 의한 일회성 교육을 통해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인권원칙을 소개하거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1회적으로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교육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하고 인권을 사회질서 유지와 착한시민 만들기를 위한 에티켓교육으로 오인하고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인권을 유행하는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하나로 해석하여 이념과 철학이 간과된 기능적

방법론으로 다루지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회복지실천가가 이용자를 교육하는 경우와 같이 위계적 관계에서 전달교육이 이뤄지는 경우 더욱 문제입니다. 이 경우 인권교육의 핵심인 사회체제와 인간관계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갈등을 의제로 조차 다루지 못하고 위계적 관계와 체제유지를 위한 순응적 태도가 정당화되는 수단으로 와전될 수 있습니다.

-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역시 문제지만 인권을 어설프게 또는 잘 못 이해하는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침해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인권이 악의적으로 활용될 경우 인권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쟁발발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주된 명분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문제였습니다. 전쟁은 인권침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아프가니스탄의 내부 분열에 따른 공동체와 문화가 파괴되고, 폭력과 살상,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아프가니스탄의 자원과 경제기반 상당수가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인권 학습은 검증된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실천가와 이용자 양자가 참여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의 원칙과 개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권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의제와 과제를 도출하며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표1> 인권에 대한 간략한 이해

<p>○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성과임. 인권은 단순히 신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왕과 같은 권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p> <p>○ 인권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고 억압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틀로 이 틀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받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의 항목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예를 들어 과거에 없던 인터넷, 핸드폰과 스마트폰 등이 보급됨에 따라 제기되는 새롭게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의 항목이 늘어남.</p> <p>○ 인권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권리의 주체임을 의미함. 따라서 인종, 성별, 국적,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는 반인권적인 것임. 이에 따라 인권은 보편성, 기본성, 상호불가분성, 법우선성, 상호의존성의 속성을 가짐.</p> <p>○ 현대 인권의 주요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선언을 구체화한 시민·정치적권리 협약, 경제·사회·문화적권리 협약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국제인권장전이 토대가 됨. 따라서 이 세 개의 문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p> <p>○ 인권은 자유·평등·연대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며 이 세 가지 가치에 따라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으로 나눌 수 있음. 이 세 가지 가치를 인권의 트라이앵글 또는 인권의 삼세대로 표현하기도 함.</p> <p>○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항목과 주체의 강조와 함께 인권을 존중할 책임과 의무도 강조되어야 함. 인권존중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 세 가지 의무를 짐. 개인은 인권학습, 인권감수성 증진, 인권실천의 의무를 짐.</p>

○ 인권침해는 강자로 부터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짐.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상대적 약자의 관점에서 약자의 인권을 우선하고 옹호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속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부당한 인권제한을 막고 인권제한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자우선, 최소제한, 공공이익에 따른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을 따라야 함.

둘. 감성 : 다수의 효율성이 아닌 소수자의 인권 중시

- 효율성과 비용문제가 사람의 가치에 우선하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공리주의적 관점, 사회복지를 단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만 생각하는 과학 지상주의적 관점⁴⁾역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의 가장 큰 전제는 지금 내 옆의 한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는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면서 정책운동과 인권운동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정책운동과 인권운동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권운동은 1사람의 사례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발제자가 참여해 온 탈시설 운동은 제가 연구소 인권센터팀장으로 일하면서 만난 L씨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콜 의존증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3년간 시설에 갇혔던 L씨가 재입소당한 뒤 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시설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동료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 결과 해당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좀 더 구조적인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탈시설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수자의 이익과 효율성, 현실가능성만을 고려했다면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제기로 부터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의제로 제기되고 이슈화되면 대안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 정책운동이 이슈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연역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인권운동은 구체적인 개인의 사례로부터 정책과 사회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반드시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있습니다. 다수의 이익, 시간대비 효과성을 따지게 될 경우 한사람의 문제를 소홀하게 대하고 정책운동을 우선시 할 수 있지만 한사람의 인권을 소홀히 다룰 경우 인권의 독에 작은 균열이 만들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미시적 실천에 강한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권활동가들에 비해 강점을 갖습니다.

- 예를 들어 탈시설화 운동의 경우 많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대규모시설이 비용도 적게 들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소수의 사람들

4) 과학지상주의의 폐해와 위험성 : 인간의 주체성, 자율성,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논의를 비과학적이며 측정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듦.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화를 할 경우 가족들의 고통도 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것이란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곤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셋. 성찰 : 이용자와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위한 성찰

- 실천가들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실천은 실천가와 이용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천가는 이용자와 평등하고 상호 참여가 보장된 '파트너십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트너십관계는 실천가와 이용자사이에 권력 배분과 공유가 이뤄지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이용자와의 소통과 참여가 전제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양자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불평등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실천가들은 이용자들에 비해 사회적 권위, 자원배분권한, 정보의 양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성찰 없이는 상대적 약자인 이용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 발제자는 2009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가와 지적장애이용자가 상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⁵⁾ 연구결과 '피상적 평등 지향형', '성찰적 실천가 우위 인정형', '헌신적 옹호 지향형' 이상 세 가지 인식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평등하고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관계(48.2%)'라는 인식을, 두 번째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실천가가 우위에 있는 관계(40.5%)'라는 인식을, 세 번째 유형은 '이용자가 우위에 있으며 실천가가 헌신하는 관계(11.1%)'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 이중 어떤 관계인식이 가장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2번 '성찰적 실천가 우위 인정형'입니다. 얼핏 보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1번 유형이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할 것 같지만, 1번 유형의 경우는 실천가와 이용자가 대등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번 유형은 실천가와 이용자가 대등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질문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라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2번 유형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1번 유형과 이용자가 지배하는 관계라고 답한 3번 유형보다 평등한 실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는 형으로 이 역시 자신의 상대적 권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위적 사유를 한다는 점에서 대등한 실천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Rothman과 Smith(1996)가 분류한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 분류틀'을 활용하여 실천의 지시성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1번 유형이 지시성이 가장 높은 '결정적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박숙경. 2010. 『사회복지실천가의 지적장애이용자와의 관계인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논문

- 이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자신과 외부환경의 한계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직면이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결과 약 60%의 실천가들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물리적 억압과 불평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영국에서 이루어진 Cohen⁶⁾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Cohen은 '실천가와 이용자와의 관계 개선은 실천가 자신들이 잠재적인 권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실천가들은 자신들이 이용자에 대해 권력(power)와 권위(authority)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천가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화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하지 못하는 상황은 관계개선을 어렵게 합니다. 이용자와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는 이용자 중심 실천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⁷⁾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은 실천과정에서의 잠재적 억압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두려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진실성과 성찰적 태도, 장애의 원인과 해결에 미치는 사회 환경의 영향 즉 사회적 모델이 갖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 책임 : 개인책임이 아닌 사회책임 강조

-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위한 기본 조건은 이용자들의 문제에 내재된 사회적 책임과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주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구조 모두 중요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실천가들은 개인적 책임을 우선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실천가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실천가들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내재된 사회적 책임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빛의 빛과 그림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둘러싼 사회구조를 직시하고 분석하며, 거시적 사회구조와 동시에 미시적 사례들이 함께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어지는 뇌성마비 장애인 화재참사, 파주 남매 화재사건,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11살짜리 손자와 함께 자살 한 할아버지 사건 등은 24시간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의 거시적 정치적 변화가 없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6) Cohen, Marcia B. 1998. "Perceptions of power in client/worker relationships". *Families in Society*. 79(4): 433-442. Academic Research Library. 영국의 학자 Cohen은 5개 거주시설의 이용자 40명(노숙인, 약물남용자 등)과 사회복지사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권력관계 유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결과 '파트너십 유형, 멘토십 유형, 권위주의 유형' 세 개의 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권력분배와 권력공유가 이루어지고 실천가가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기술과 지식을 갖춘 촉진자로 역할 하는 유형입니다. '멘토십 유형'은 신뢰를 중시하면서 이용자의 생활에 관련된 결정에 실천가의 권위를 허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실천가는 교사, 안내자, 역할모델로 역할 합니다. '권위주의 유형'은 불평등한 관계로 권력이 실천가에게 집중되어있으며 실천가가 전문가로서 지배하는 유형입니다. 이중 가장 권장되는 관계는 당연히 파트너십 관계일 것입니다.

7) Biehal, N. 1993. "Changing practice: participation rights and community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3: pp. 443~458.

8) Reeve, D. 2000. "Oppression within the counselling Room", *Disability and Society*. 15(4). pp. 669~682.

어려운 사례입니다. 미시적 현장에서 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 현장에서 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여전히 사회책임보다는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치료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이용자의 문제에 대해 사회책임보다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최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2년 Deeley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데올로기가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결과 정상화원리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주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천가들이 정상화를 비현실적이며 비실천적이라고 생각하고 보호주의(paternalism) 이데올로기 입장을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실천가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⁹⁾ Reeve(2000)는 상담실에서 실천가와 지적장애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억압을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장애 평등 훈련(Disability Equality Training)이 제공되어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치료적 실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¹⁰⁾

- 우리나라의 장애인식 및 장애개념과 관련된 연구 역시 실천가들의 장애개념이 이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며, 실천가들이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장애개념과 무의식적으로 실천에 반영된 장애개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동모금회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애개념 실태를 조사한 김정우·박경수(2005)의 연구에서는 개별적 모델이 74.1%로 나타났으나¹¹⁾, 박경수(2008)가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애개념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적 모델 45.7%, 사회적 모델 54.2%로 나타났습니다.¹²⁾ 두 개의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는 조사 시기나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반영된 장애개념'은 무의식적으로 수용된 장애개념일 가능성이 높고, '설문지에서 선택한 장애개념'은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장애개념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장애를 개인책임으로 보는 실천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참여: 전문가중심체계로 부터 이용자 중심체계로 변화

-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이용자를 대상화하는 전근대적인 실천방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자와 전문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나마 열악한 상황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상대방이 권력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9) Deeley, S. 2002. "Professional ideology and learning disability: an analysis of internal conflict". *Disability and Society*. 17(1): 19-33.

10) Reeve, D. 2000. "Oppression within the counselling Room", *Disability and Society*. 15(4). pp. 669~682

11) 김정우·박경수. 2005.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통해 본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패러다임동향분석."《한국사회복지학》제57(1)호, pp. 147~167.

12) 박경수. 2008.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지향성에 관한 연구."《재활복지》 제12(2)호, pp. 19~47

속도가 느려지고 피곤해지며 나의 주도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천현장에서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참여보장을 위해서 실천가들은 강점 관점, 상호주의, 과정을 중시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용자가 실천과정에서 파트너로 참여하지 않은 채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렵게 설명하지만 사실 인권이 별거겠습니까? 결국 인권은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개인의 자유란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그녀의 의사 곧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그녀를 위한다는 것은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실천과정에서 이용자 참여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배려차원이 아닌 이용자들이 당연히 갖는 민주적 권리입니다. 물론 억압된 욕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회적 경험이 미숙하거나 인격적인 문제를 가진 이용자들에 의해 실천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들을 문제시하고 이용자 참여를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 실천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¹³⁾ 첫째, 서비스 실천 전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가능한 공식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절차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과정은 실천가 주도성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자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관점 : 욕구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

-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가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곧 '어떤 이용자가 00할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그가 00할 권리를 갖는 것'이란 진술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욕구는 누구나 갖는 것으로 욕구를 실현할 책임이 없지만 권리는 권리실현의 책임을 진 국가와 사회복지기관, 실천가들이 존중 보호 실현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대규모 생활시설을 벗어나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길 원하는 00씨의 바람을 욕구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비스가 부족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욕구실현을 돕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00씨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

13) 박숙경. 200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권리보장 방안' 『인권법평론』 창간호,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관점에서 문제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립욕구를 갖는 00씨가 아닌 00씨의 자립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 제도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가는 00씨를 설득해서 시설에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설득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00씨의 자립생활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인권의 1차적인 책임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집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권을 기능적 실천 패러다임으로 치부하는 움직임, 소비자주의 담론에 기대 사회복지를 시장화하려는 움직임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정당화되지 않고 평등과 연대책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복지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복지제도를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팽배한 소비자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이해하거나 서비스이용자를 소비자로 설명하는 소비자주의는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조차 사회복지를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바라보게 되면 복지의 시장화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괴물에 의해 애써 구축해온 복지제도의 독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현실과 자본, 영리화의 횡포를 다룬 영화 식코는 이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대안 : 실천현장에서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 개발

-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매순간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이용자의 견해와 사회복지실천가의 견해가 다를 경우 실천가들은 어떤 결정이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헤어지길 원치 않는 지적장애여성, 비만과 당뇨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인스턴트식품을 계속 먹으려는 시설거주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짐 아이프 교수는 인권에 기반한 실천은 이용자와 소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추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¹⁴⁾ 그러나 대화조차 쉽지 않은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매우 강하게 자기주장만을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인격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을 지원할 경우는 대화를 통한 추론적 과정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의 자기결정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등

14) Ife, J. 김형식·여지영 역. 2001.《인권과사회복지실천》. 인간과복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 역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은 지금 서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인권원칙을 통해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 의사결정 원칙과 딜레마상황에 적용할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 것입니다.

<표2>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 의사결정 과정

- 이용자의 의사와 문제 강점을 파악한다.
- 가능한 여러 관점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문제 혹은 딜레마를 규정한다.
- 핵심 원칙들과 경쟁적인 이슈들을 결정함으로써 관련된 잠재적 이슈를 규명한다.
- 해당 윤리강령과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 동료, 슈퍼바이저 혹은 법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가능성 있는 행동노선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
-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른 선택이 미칠 영향의 경중을 고려하여 특정 행동노선을 결정한다.
-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3>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¹⁵⁾

구 분	리머	돌고프 등	양옥경	이효선	나
윤리원칙1	기본재화우선원칙 (의식주)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	
윤리원칙2	개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윤리원칙3	개인의 자기결정권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비밀보장과 알 권리	사회정의	
윤리원칙4	규칙 준수	최소한 해악의 원칙	균등한 기회제공	비밀보장과 알 권리	
윤리원칙5	공익우선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	규칙 준수	공익우선의 원칙	
윤리원칙6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보장 원칙			
윤리원칙7		진실성과 정보개방 원칙			

15) 이원숙. 2008. 『사회복지실천론』

맺으며

- 이상으로 그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두서없이 펼쳐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생각이 정리되고 앞으로 간 듯합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 함께 더 나아가겠지요. 다음은 토론을 활성화하고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질문목록을 제시한 것입니다. 좀 더 보완하여 자기점검목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질책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도움이 되었다면 강점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 점검 목록

<인권에 대한 이해>

- 나는 인권의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 나는 인권의 원칙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 나는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 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 한 실천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적용 원칙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 나는 인권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세계인권선언, 관련 규약, 헌법, 사회복지윤리강령,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항목을 알고 있는가?)
- 현재 실천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쟁점은 국제인권규약과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견주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 나는 나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권리적 관점>

- 나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리와 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 나는 이용자의 욕구를 이용자의 권리로 인정하는가?
- 나는 이용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가?

<이용자와의 관계>

- 나는 이용자를 파트너로 인정하는가?
- 나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있는가?
- 나는 이용자가 권한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 나는 이용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지(예를 들어 성적소수자 등)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이용자의 문제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강점을 얼마나 파악하는가?
- 나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밀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용자 참여>

- 우리기관은 이용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접수 → 사정 → 목표설정 및 계약 → 개입 → 평가 종결)
- 우리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절차가 보장되는가?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공식적 절차를 알고 있는가?
- 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는가?
- 나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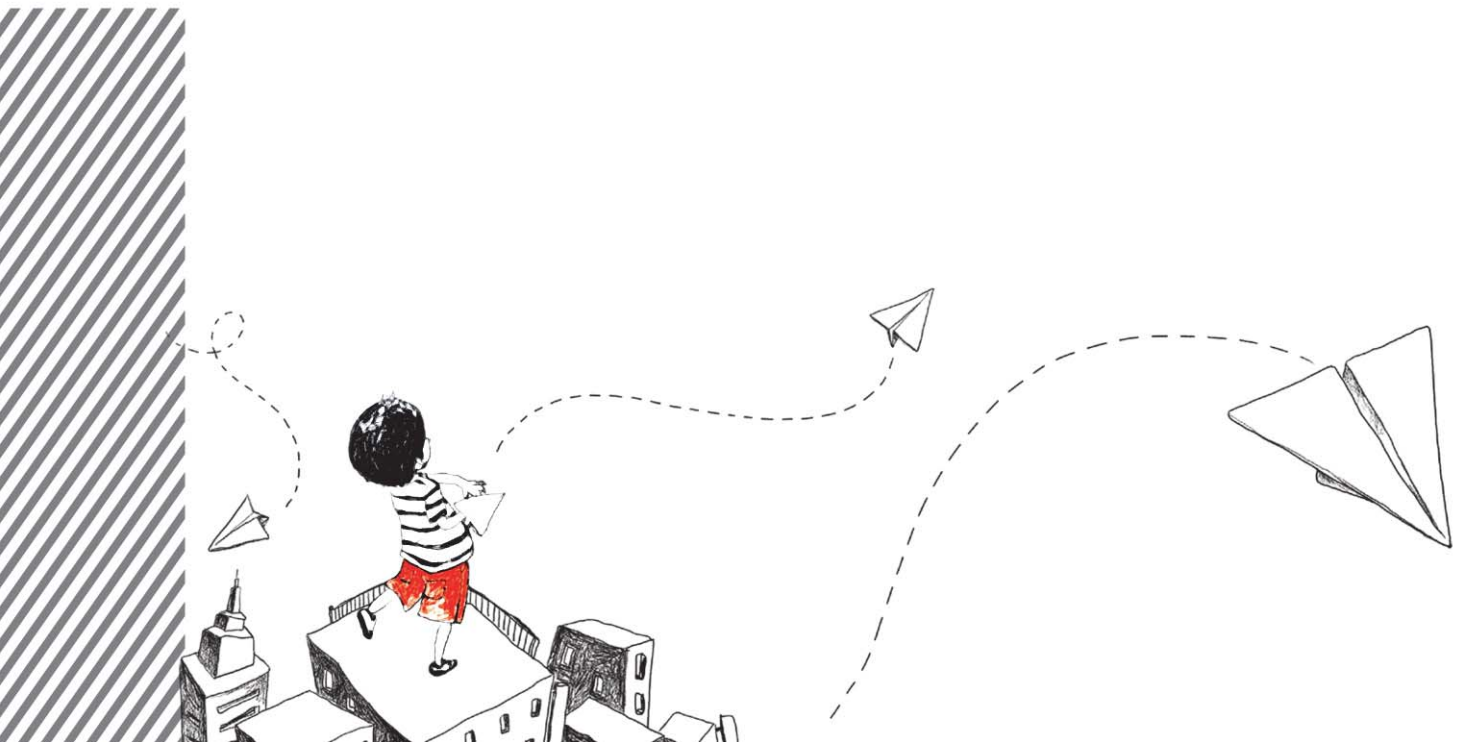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하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이용서비스 영역-

오유정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이용서비스 영역-

오유정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 글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윤리강령의 전문입니다. 얼마 전 인권실천가 심화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으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읽으면서 인권과의 연관성을 고민했었습니다. 이 안에는 인권이 말하는 차별금지, 권익옹호, 인간존엄성, 자기결정, 사생활존중, 비밀보장, 사회제도 개선활동 등이 담겨져 있어 발제자의 의견처럼 사회복지가 이미 인권을 내포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인권에 대한 학습을 요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는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들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다소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짐 아이프의 말을 인용하자면,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즉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가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인권의 범위가 작아서 생기는 딜레마로 어려움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제자가 제시한 인권실천 지향의 필요성과 과제의 내용(필수과목, 사회민주주의, 인권=사회복지, 감성, 성찰, 관점 등)으로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발제자가 제시한 인권실천의 방법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00중학교 이학년 000학생이 2주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복지관에 의뢰되었습니다. (학생부장과 전화통화 후, 000학생의 징계사유와 개인정보가 적힌 의뢰서가 팩스로 접수

됨) 000학생은 동급생에게 삼만원을 갈취하였으며, 인근 빌딩 경비실 문을 발로 심하게 차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였고, 민원이 접수되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2주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면담 시 000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 하였지만, 공부하기 싫었는데 외부로 사회봉사를 와서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반면, 학생부장은 잘못에 대한 징계로 000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며, 학생인권에 대해 사람에게만 있는 권리이므로 징계학생에게는 박탈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회봉사 기간 중 또 한번 선도위원회로 불려간 000학생은 일주일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사유는 교사에게 화난다고 식판을 었었다고 하여 교권침해로 징계한 것입니다. 000학생은 학교가기 싫었는데 좋다고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통한 학생의 개인상황, 가족상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한 영상물 등을 통해 교육을 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징계 받은 학생에게 인성을 강조한 프로그램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징계보다 강도있는(힘든 노역) 사회봉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힘든 일을 시켜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보다 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는 많은 사례와 접하게 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주고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권, 학생인권, 다수의 학생과 소수의 학생, 효율성 등 많은 부분 대립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권실천 과제 및 점검 목록을 바탕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권한과 능력의 부재로 느껴지는 어려움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에 자격조건이 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고민입니다.

지난 해 지역주민을 통해 이웃 중, 정말 사정이 딱하고 어려운데, 동주민센터에 찾아도 가보고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만 하고, 가족들의 생계는 공과금 연체와 월세체납 등으로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정의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상황과 사정하는 단계에서 알게 된 가족은

4-5년전 가정의 주경제활동원인 이○○씨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를 하다가 사고로 하반신 골절로 인해 몇 차례의 수술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지만, 그 때마다 왼쪽 다리를 쓸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었고,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재차 검사를 요청하고,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외관상 아무문제가 없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수술이 잘 못된 것 같다는 불확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5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써 하루아침의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몇 군데의 병원을 찾아가봐도 통증질환일 뿐 정확한 진단명을 내어줄 수 없다는 말과 동주민센터에 찾아가 가정의 상황을 알리고, 수급신청을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근로능력평가등급에서 의사가 진단명을 내려주지 않아 장애등급도 받지 못하고, 근로가능하다는 것에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씨의 이 질환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녹내장으로 시력상실 위기에 놓여있고, 한쪽 고막이 훼손되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유발되는 아내가 일용직근로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나가고는 있으나, 밀린 월세와 공과금은 지역사회내 공공과 민간자원이 아무리 연계된다고 해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정말 한쪽다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상 불편함과 일상생활 자체의 불균형이 일어난 상황에서 통증에 대한 진단은 내릴 수 없다는 것과 공공에서는 증빙이 안되니 수급가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가정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사회적 권리 중 사회보장권과 사회복지 서비스권과 관련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실천에서의 고민해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분임토론 시간에 보다 자세한 실천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과 사회복지의 당위와 현실에 대한 차이의 폭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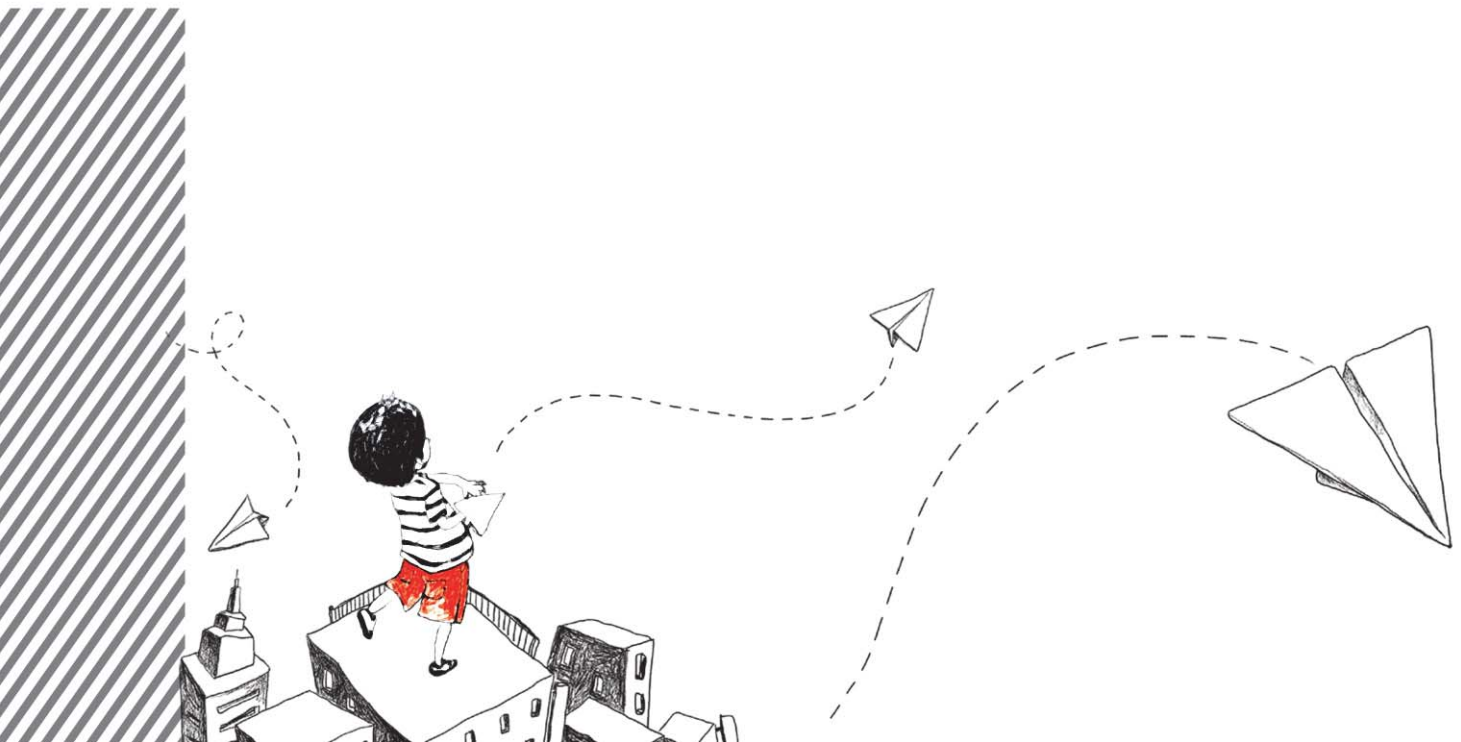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하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노인서비스 영역-

신승희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부장)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노인서비스 영역-

신승희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부장)

2년 전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의 인권실천가 교육을 받고 인권네트워크 실천기관으로서의 시간을 지나면서, 구체적인 실천대안으로 현실에서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의 실천을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뚜렷하게, 자신있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일부 사회복지현장의 비인권적인 행태들, 법인의 인사비리, 금전적 비리들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대다수의 현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있게 인권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머릿속의 고민들이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구체화된 실천으로 이어질까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인권활동가들 입장에서 본 사회복지실천가들의 모습이 당연한 인권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구조를 바꿀 생각 없이 미시적 실천에 머물며 자신들의 뒤편 구체적 대안제시를 인권활동가들에게 요구하는 방어적이며 수동적인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것.....그것이 아니라면 반론을 명확하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몇 일전 사례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참여했는데, 250여명의 사례관리자들 앞에서 사례관리의 성공사례로 당사자가 직접 스피치하는 것을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어떤 의도의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왔고, 내내 울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미안함과 민망함이 교차하는 아주 길게 느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진한 사람은 매우 감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나 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따지고 싶었던.... 이런 모습이 현장에 존재한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저는 노인영역에서의 토론을 담당하였으므로, 노인실천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노인, 더 이상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언급은 하지 않아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대선을 얼마 안남기고 있지만, 지자체 선거 등 표심을 쥐고 있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투자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의왕시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대다수의 어르신들

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14만 인구에 노인복지관 2곳, 양쪽 최소 1,600명의 어르신이 매일 복지관을 내방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노인전용목욕탕도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분명 복지관이 지역 노인을 위한 거점이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민간요양기관들까지 합하면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경제적 해결책이 없는 독거노인의 증가, 심각해진 노인자살, 우울증, 치매어르신에 대한 대책 등 우리 사회의 노인의 실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몇 가지 화두만 던져 보고자 합니다.

○ 현장의 사업영역 들여다보기

사회복지가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속히 발전한 바우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는 복지의 발전과 후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 내어 놓은 상품처럼, 그 속에서 이용자의 인권보장과 과연 사회복지가 발전되고 있는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가사간병지원 등 약간의 차이로 어르신이 이리로, 저리로~ 과연 어르신이 차이를 알고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장기요양은 어르신을 그야말로 유치하기 위해 상업적인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경우와, 심지어는 요양보호사들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요양 받는 어르신의 존중받을 권리,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민간에 맡겨져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현재의 평가제도만으로는 인권이 보장받는 복지시스템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제도로 40대~50대 여성이 대거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등 돌봄직종에 투입되었는데, 낮은 임금, 업무영역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한 종사자로서의 처우 보장, 서비스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 집니다.

○ 실천가와 이용자와의 관계 들여다보기

복지현장에서 실천가와 이용자와의 상호 평등한 관계는 어떤가요? 복지관 현장을 들여다보았을 때 변화해야 할 과제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알게 모르게 담당사회복지사와 어르신들과의 기 싸움, 주도권 싸움이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끝도 없는 어르신의 요구' '본인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우선 화부터 내는 어르신'들이라는 생각 속에서 스트레스가 일상인 실천가도 있고, 나름 일을 잘 풀어나가는 실천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 떨어져 보면 그 상대방의 어르신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나, 잘 풀리는 관

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느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어르신과 실천가가 관계하고 풀어나가는 방식 속에서 원하는 걸 무조건 해주었는가의 답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 기관의 실천방식 들여다보기

인권실천네트워크 기관으로 현판까지 걸었는데, 우리 기관이 인권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사자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행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이 갖는 인권적 관점과 윤리적 이슈의 항목을 만들었고, 각 영역에 있었던 딜레마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장면을 나누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인권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적잖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인력자체의 행동을 평가받는 듯한 지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어르신들은 2인 2개조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인권교육을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스스로도 인권이라는 단어는 아직 생소한 듯 느껴집니다. 종사자도, 어르신도 소통할 수 있는 회의구조는 많습니다. 하지만 갖추어진 제도도 오픈 마인드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때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선점하지 않도록 고른 홍보를 하는 것, 가능한 선착순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권력이 소수어르신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등 평등한 기회제공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잘 어우러져야하는 사안이 복지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이용자 중의 소수자 들여다보기

우리 복지관의 이용회원 중에 몇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97세 *어르신은 한 달에 한번 자녀 집을 돌아다니며 숙식을 하시는데, 주변 어르신한테 죽고 싶다고 5만원을 주시며 약을 사다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양로원에 갈 수도, 요양병원에 갈 수도 없고, 따뜻한 보살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선생님이 위로도 하고, 가족하고 상담도 해 보았지만, 큰 해답은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치매초기 *어르신은 집에는 답답해서 있지를 못합니다. 가족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루 정해진 코스로 복지관, 보건소 다니시는데, 셔틀버스에서 살짝 잠이 들었는지 정류장을 잘못 내려 집에 다음날 아침 7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못 찾고, 어르신이 스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어르신은 누가 같이 다니지 않는 이상은 언제 또 길을 잃을지 모를 일입니다.

- *어르신은 새벽 1시부터 파지를 주우십니다. 남들 안다닐 때부터 주우셔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겨울철에 갑자기 찬바람 쐬면 큰일나요."라고 말하지만 "할 만하니 합니다"라는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 *어르신은 아주 작은 빌라를 소유해서, 현실에서는 자녀들이 10원도 보태주지 않지만, 수급자도 될 수 없고, 오로지 20만원 7개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수술은 꿈도 못 꾸고 있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수 밖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어르신의 어려움을 나눌 방법이 마땅치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 치매 어르신의 정책, 최저생계비 보장의 수급제도도 사각지대를 다 품어 내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해진 사업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일, 복지관 부서에서 주어진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보고 사고한다면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욕구의 기술이 아닌, 권리의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을까요?

• 인권학습이 현장에서의 실천가와 이용자 양자가 참여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서없는 의견으로 토론하기 전에 더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몸으로 하는 만큼 행정적인 일도 몰아치는 현실에서 사회 복지실천가가 적어도 인권실천의 중요한 전문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서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증명해 내고 행위 안에 녹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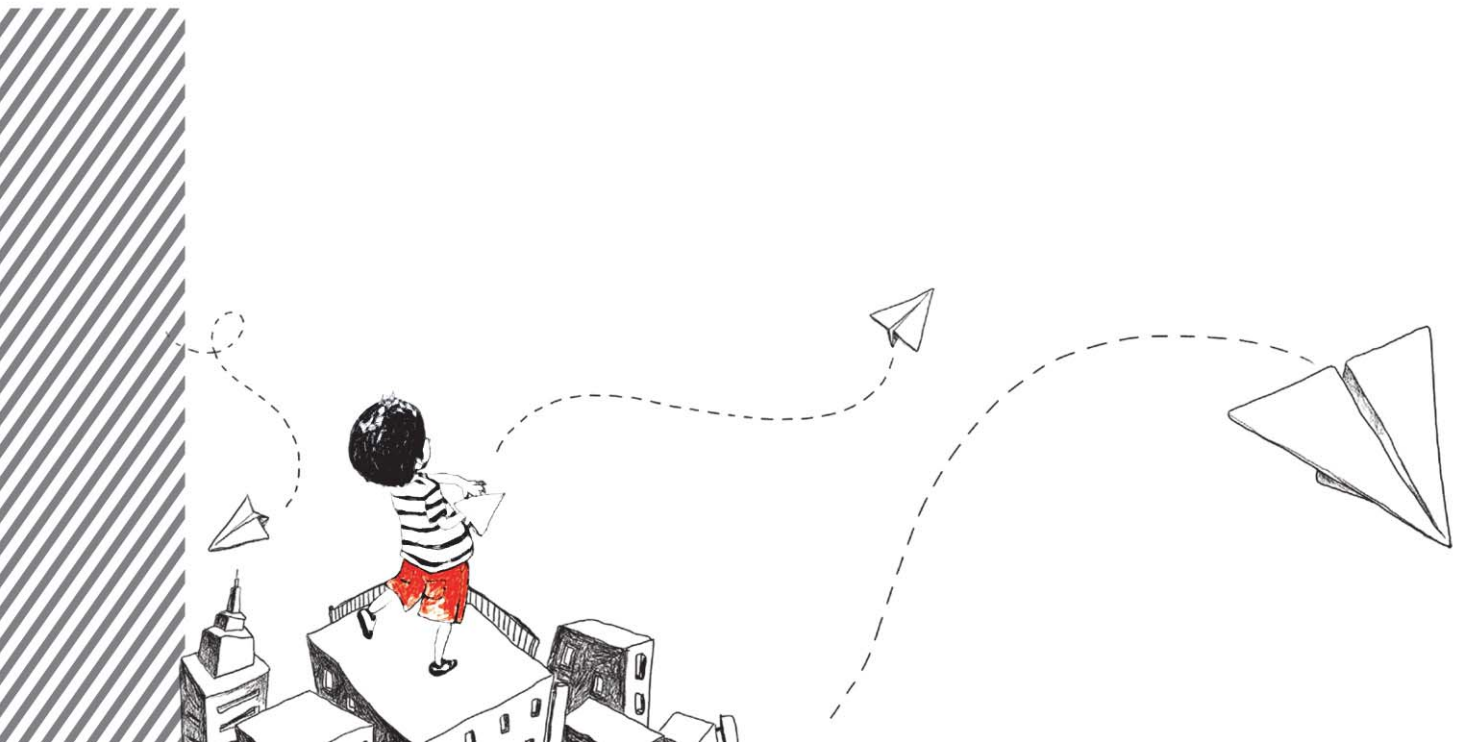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하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장애서비스 영역-

이인숙 (안산평화의집 과장)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장애서비스 영역-

이인숙 (안산평화의집 과장)

1. 서 론

워크샵을 준비함에 있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였던 부분들에 대해 이번 워크샵에서 어떻게 접목시킬지 막막했는데, 발제자의 원고를 통해서 나름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환경의 최근 변화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로 개편, 활동보조지원제도의 도입 및 확대, 시설평가 및 점검, 이용자 참여 및 권리증진,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별 편차, 이용자 중심의 시설기능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 소규모 등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들도 변화의 중심에 함께 서야 하는데 어찌 보면 조금은 주변인처럼 변화에 동떨어져 사고하는 것들을 볼 때면 '연대'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토론문에 있어서 발제자의 원고 일 부분 중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실천 과제' 부분에 대해 다소나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나름대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실천 과제

첫째, 사회복지실천가 대상의 인권전문가 양성

발제자의 원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 실천현장에서 인권교육의 경우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보니, 인권에 대한 피상적인 부분들만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현장전문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한국장애인시설협회가 시설 직원대상으로 인권교육 전문가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외부 강사의 경우는 현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 교육에 치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천현장에서는 딜레마 사례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기에 실천가중심의 인권전문강사의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다수의 효율성이 아닌 소수자의 인권 중시

이 논제에 있어서도 '지금 내 옆의 한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부분이 가장 와 닿는 부분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면 개별적인 서비스

를 지원하기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령, 예산, 인력, 시설의 물리적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이 이용자의 개별적 서비스 지원을 제약하니, 소수의 입장보다는 다수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설에도 탈시설화 바람이 불어와 현재 시설을 소규모화려는 정책적인 제안과 함께 시설 자체적으로 체험홈 및 그룹홈을 만들어 시설이용자의 탈시설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입 단계의 수준이라 기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하고, 탈시설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시책 및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이용자와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위한 성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실천가와 이용자 간의 상호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토론자도 '시설이용자와 실천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수평적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제자의 원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실천가가 우위에 있는 관계' 즉 성찰적 실천가 우위 인정형이 가장 인권에 접근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넷째, 개인책임이 아닌 사회책임 강조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현장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애가 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개념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네거티브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이슈는 자립과 주거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자립과 맞물려 최근에 한 여성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퇴근 한 이후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시간이 한 달 최대 180시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최대 360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의 자립 및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활동보조 서비스제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없다면 탈시설화 정책은 어찌 보면 '오르지 못할 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전문가 중심체계에서 이용자중심체계로 변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가 제공자 중심에서 당사자중심서비스로 전환됨에 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지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천가들의 인식의 전환이지 아닐까 합니다. 당 시설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증의 장애인의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 자체적으로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직원들이 거주이용자들의 옹호자가 되어 이들에 대한 사정, 서비스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을 함에 있어 시설에서 좀 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장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욕구의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

경기복지시민연대 인권실천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전, 저의 모습은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거주이용자분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것에 기초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권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큰 변화된 모습입니다. 시설 탕을 하고 제도적인 탕을 하기 전에 이용자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렁이의 꿈틀' 동영상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을 한 선철규씨의 이야기에 있어 그 옆에서 묵묵히 선 철규씨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는 '안똥'의 역할을 우리 실천가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곱째, 실천현장에서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 개발

토론자인 저도 현재 실천현장가 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과 딜레마' 사례 연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발제자가 제시한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용자 중심의 딜레마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인권실천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2011년~2012년 2년에 걸쳐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실천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실무자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과 더불어 자신의 성장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권실천네트워크 참여기관 중 유일한 시설의 관계자 관점에서, 발제자가 원고에서 계속 언급했던 부분 즉,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지원이 아닌, 권리에 기반 한 서비스 지원'으로의 인식 전환이 본 시간을 통해 저의 가장 큰 사고의 전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장애인분야에 있어서는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을 지원함에 있어 딜레마적인 사례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분임토의 시간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 인권실천 공유 사례 』

사례1)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문제 및 차후 지원방향

친척집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2급 이**의 경우 고모부의 성폭행으로 인해 성폭력상담센터에 의뢰되어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된 대상으로, 성폭력센터에서 이러한 위기 개입이 필요한 장애인을 분리조치하기 위해 시설을 알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시설에서 이 장애인분을 임시 입소하게 되어 현재 1년여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고모부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9년의 실형을 받았고, 시골에 보호자이신 할머니가 계셔 대상자에 대한 수급급여 및 기타 양육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조만간 데리고 가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의 성문제 발생 시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 등이 많지 않기에 시설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설특성상 정원이 항상 채워져 있기에 입소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따른답니다.

사례2) 시설 퇴소를 요청하지만 연계할 가족이 없는 사례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용자 김**씨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와 성격도 맞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 원가정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원가정에서는 이용자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전혀 없어서 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설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사례3) 체험홈 거주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

탈시설화의 정책으로 시설에서 지역에 체험홈을 마련하여 이용자분들이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용자분이 늦은 시간에 주택안을 배회함에 있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혼자 사는 지역주민 집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일도 발생했답니다. 또 폭행사건에 연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막막한 상황들이 많이 있답니다.

사례5) 장애인 취업관련 사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성인 남성 장애인이 취업을 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동거가족인 어머니가 취업을 반대합니다. 복지관 취업담당자는 취업업체와 논의 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급여는 같은 업무를 하는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취업담당자는 이러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4) 과잉행동을 하는 장애인 지원방향

폭력적인 행동과 이탈 행동하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태도. 폭력(행동, 언어)을 행사하는 장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강압적인 행동을 하여 저지시킬 때에 사회복지사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저지방법이 아닌 다른 교육 방법에 대한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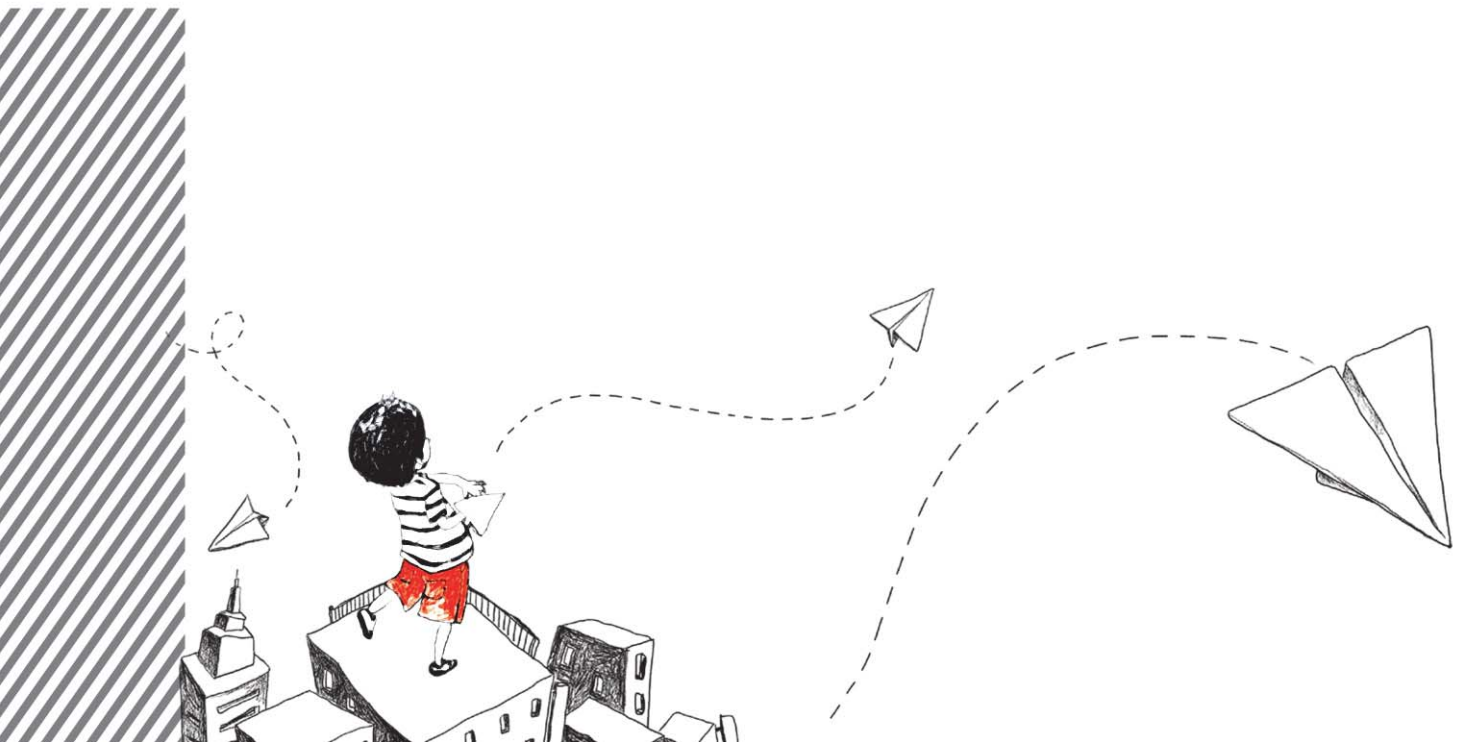
제1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하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인권, 낯설지만 익숙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 토론문

-인권, 낯설지만 익숙한-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인권은 천부가 양도한 권리다?

인권의 역사는 인간이 아닌 자들이 인간이 되고자하는 투쟁의 역사다. 비시민인 사람들, 투명인간인 사람들, 열외이고 배제되고 쓰레기인 삶들이 '나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등장하는 역사다. 그래서 '인권은 천부가 양도한 권리다'라는 말은 현실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감히 말한다. 낯선 사람들. 나 또는 우리 삶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소외되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낯선 향료 냄새가 뒤섞인 식당과 일터의 이주민이며, 강제자율 학습을 견딜 수 없다고 헌법 소원한 청소년이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냐, 여자친구가 있냐고 묻지 말라고 말하는 동성애자이다. 그리고 3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불에 타죽은 장애인이다. 그들은 삶 속에 투명망토를 뒤집어쓴 채 등장했으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경계가 바뀐 어느 이국의 도시에서 "니네 나라로 꺼져버려"라고 내 발등에 침을 뱉는 인종주의자들을 통해 나의 모습 그대로 등장한다. 그래서 인권은 "어쩌면 비시민을 통해 시민의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라는 팻말을 든 투명인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때리고 욕하는 이들을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 우리도 욕먹고 맞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¹⁶⁾" 우리 모두는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이다. 그래서 자유, 평등,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는 "배제에 반대하고 포함을 열망하는 것이 그 변신의 추동력이었다. 변신에는 늘 도전하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틀에 대한 재 고려가 있었다.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당대의 투명인간이 드러나거나 입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처럼 구조에 대한 변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투명인간의 망토를 뒤집어쓰고 세상을 보는 시도마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¹⁷⁾ 인권의 실천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제가 아닐까.

규범이면서 현실과 불화하는 인권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¹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밝혔듯, 인권은 헌법과 법률, 국제조약 등에서 등장하는 가치중립적이

16) 류은숙 '사람인 까닭에' 푸른숲

17) 같은 책.

18)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1항

며 윤리적인 개념이다. 어느 누구하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권의 이름으로 구체화된 권리 중 대표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자. 인권의 대표선수인 '집회시위의 권리'조차 현실에서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심지어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 광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갈등을 기억하면 된다. 주거권의 경우를 들어 보자. 유엔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19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11조 1항에서 정의하는 주거의 권리와 강제퇴거금지 원칙들을 보자.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¹⁹⁾

사회권규약에서 명문화된 주거의 권리는 1991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밝혀졌다. 그중 점유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은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규범 속에서 등장하는 주거의 권리조차 현실에서는 첨예한 문제로 등장한다. 용산참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용산참사 이후 만들어진 '강제퇴거금지법'은 국회에 계류된 채, 현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은 현실에서의 '인권'을 어떻게 보편의 함정에서 구제해, '현실'의 불화 속으로 끌어 들일 것이며, 불화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원칙을 지키며 갈등을 중재하고 인권에 근거한 현실로 만들 것인가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응용적 서사방식에 속한 사람들

조효제 교수는 인권의 서사방식에 대한 세가지 흐름을 말한다. 인권에 대한 신념과 식견을 갖춘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국제인권전문가,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인권소관부서의 공직자, 그리고 인권학자들이 주도하는 첫 번째 흐름 '전문적 서사방식'.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지만 그것의 전문적 서사방식에는 속하지 않는, 하지만 한국의 정치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예리한 비판의식을 견지하는 진보주의자, 급진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비판적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하는 '근원적 서사방식' 그리고 전문적 인권운동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러 부문에서 인권개념을 원용하려는 열의가 있는 활동가, 교육가, 정책전문가들이 있는 '응용적 서사방식'의 세 가지 흐름을 구분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마지막 흐름인 응용적 서사방식에 속하는 집단이다. 조효제 교수는 응용적 서사방식에 대해서 "이런 서사방식은 실용적이고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이런 흐름에서 있는 많은 이들이 흔히 '인권이 훌륭

1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11조 1항

한 사상임에는 분명하나 그것을 현실정책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매개고리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 것 같다.²⁰⁾”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응용적 서사방식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회정책의 실천방안으로 '권리에 기반을 둔' 응용적 접근방식과 여타 방식-예컨대 사회민주적 배분 방식-사이의 장단점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또한 인권의 원리를 응용하는 데에만 강조점을 두는 탓에 풍부한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인권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제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²¹⁾”고 정리한다.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과제

하나, 학습. 인권 제대로 이해하기 : 사회복지 현장에 맞는 인권교육 내용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권친화적 현장 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둘, 감성. 다수의 효율성이 아닌 소수자의 인권 중시 : 무엇이 소수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가, 구조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예산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당연히 배분되어야 할 권리와 몫인가.

셋, 성찰. 이용자와 상호 평등한 관계를 위한 성찰 : 인권에서 권력의 문제와 연대의 실천 들여다보기. 우리 모두의 권리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넷. 책임. 개인책임이 아닌 사회책임 강조 : 왜, 개인의 책임인가라는 질문 던지기,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무주체는 누구인가, 개인인가 사회인가.

다섯. 참여. 전문가중심체제로 부터 이용자 중심체제로 변화 :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는 인권이 있는가. 민주주의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인권에도 상호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인권은 속도가 느리다.

여섯. 관점. 욕구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 : 인권의 주인이 권리를 누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옹호자의 의무, 대리해서 권리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타인의 권리.

일곱. 대안. 실천현장에서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 개발 : 백개의 사례가 백개의 인권. 실천이 쌓여야 답을 만들 수 있다.

나오며

“인권이 지향하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인권은 처음부터 아주 높은 추상성을 전제로 하는 이론체계가 아니며 어떤 최대치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상도 아니다. 그리고 인권은 최소한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소절대화'라는 흔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

20)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1) 같은 책.

다. (최소절대화라는 표현은 Absolute-minimum'을 가리킨다.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요구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구 자체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처럼 제시하되, 그것만큼은 양보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 줘야 타인을 같은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접근 방식은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거부하기 힘든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권은 목표와 함께 그것을 추구하는 수단(작동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이념들이 고결한 목표와 덜 고결한 수단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선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²²⁾

인권의 대표적 목록인 연대는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되고,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네가 되는 거잖아. 서로의 차이는 서로의 존재 조건이야. 그런데 네가 그런 차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건 나쁜 아니라 모두와 상관있는 문제야. 그러니 같이 의논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²³⁾”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너의 그 차이를 참아 내고 봐 줄게.라고 말하는 관용도 아니고, 중앙방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 방송을 멈추고 하나로 집중하자는 대동단결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연대는 “그것만으로도 어디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관용을 넘어 타인의 불리함에 적극 뛰어드는 자세” 즉, 적극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 곧 갈 거야.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어느 골목에서 죽음과 만나기 전에 후딱 채비를 하는 것이다. 연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짚으며, 글을 마친다.

22) 조효제 같은 책.

23) 류은숙 같은 책.

